

[illegible]

III. 공급일정(예정)

구 분	일 정	비 고
• 입주자모집공고	2017.12.14.(목)	일간신문, LH청약센터(http://apply.lh.or.kr)
• 청약접수	2017.12.20.(수)	LH청약센터(http://apply.lh.or.kr)
• 당첨자발표	2018.01.11.(목)	LH청약센터(http://apply.lh.or.kr)

* 상기 추진일정은 업무추진 중에 변경될 수 있으니 추후 우리공사 청약센터 (<http://apply.lh.or.kr>)에 게시되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IV. 임대조건(미정) : 입주자모집공고 시 확정

II

특별공급 자격

I. 기본요건

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기관에서 아래의 자 중 추천자

1. 장애인, 국가유공자 ☞ 청약저축(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) 필요 없음
2. 청약저축(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)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장기복무제대군인, 10년이상 복무군인, 북한이탈주민, 일군위안부피해자, 한부모가족, 우수기능인, 우수선수, 공무원, 중소기업근로자, 의사상자, 납북피해자, 다문화가족, 대한민국체육유공자

※ “무주택세대구성원”이란?

- 세대주 및 세대원(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)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
- 가.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
- 나.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·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
- 다.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
- 라.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

II. 공급대상 제외

1.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구성원(세대주,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)이 아닌 분
2.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및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분
3. 재당첨 제한 적용주택에 기당첨되어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(1년) 내에 있는 분
4.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5조의 특별공급 및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개정('10.2.23) 이전에 “3자녀우선공급” 및 “노부모부양 우선공급”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(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. 단,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5조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이상 가능)

III

유의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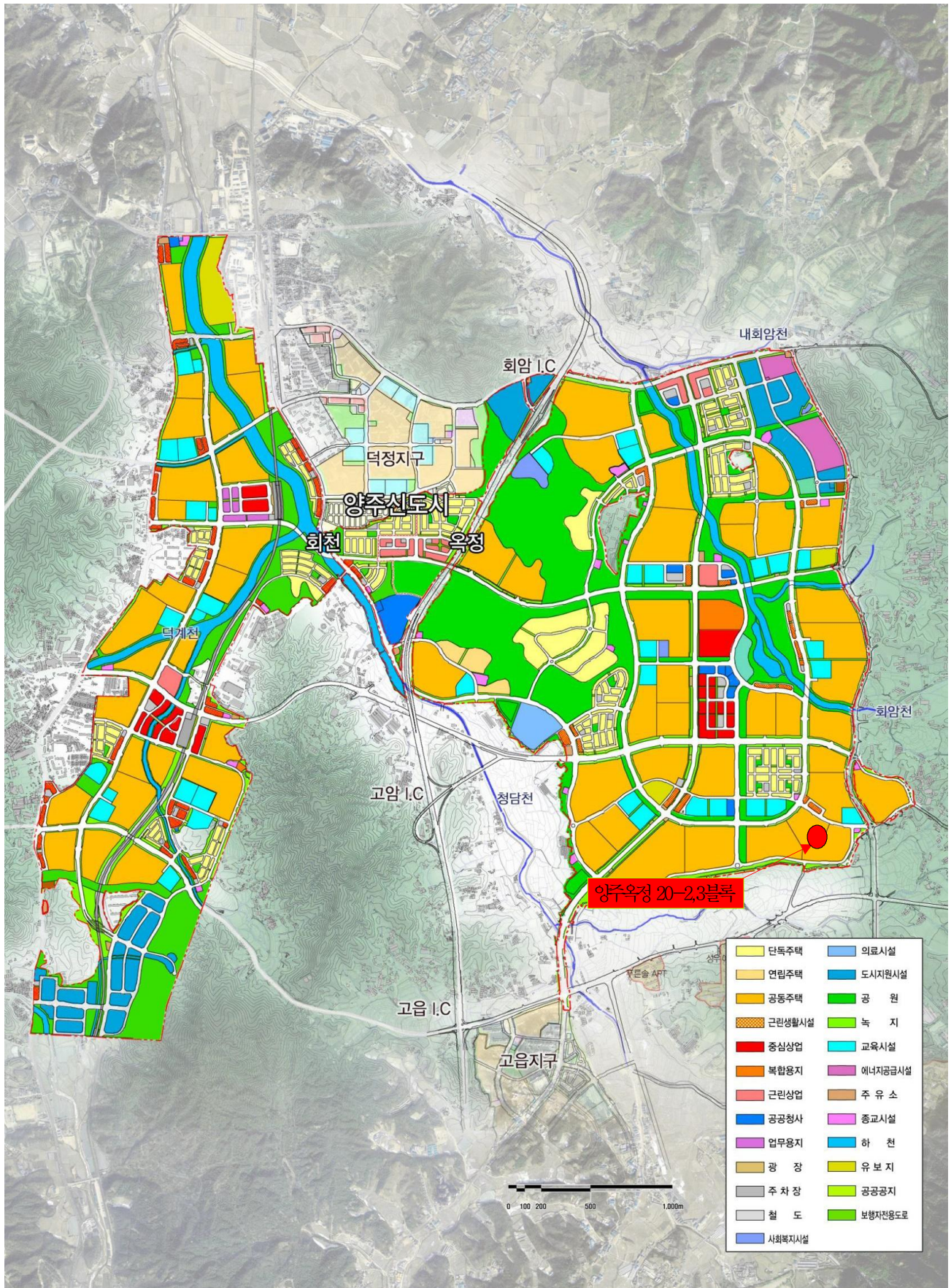
-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 일에 LH청약센터 (apply.lh.or.kr)에서 인터넷 신청하셔야 당첨자로 확정되며,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어 계약이 불가하고 대상물량은 일반 공급으로 전환됩니다.
- 임대조건, 재당첨제한기간, 공급대상 주택 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(apply.lh.or.kr)에 게시되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.
- 당첨자 발표 이후 무주택 등의 자격요건에 대한 확인결과 '공급대상 제외자'가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추천 및 동호배정과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, 부적격당첨자로 명단 관리되어 1년간 재당첨제한을 받게 됩니다.
- 신청한 주택형의 동 호수 배정은 관련법령에 따라 신청 주택형 내에서 총별·향별·특별·일반 공급 등의 구분 없이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의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. (동호변경불가)
- 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, 다자녀가구에 한하여 1층 주택 우선 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, 경쟁 시 배정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
-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(매매, 증여, 그 밖에 권리 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, 상속의 경우는 제외)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.
-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을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, 해당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IV

관련도면

- 양주 옥정지구 토지이용계획도 1부 : 붙임 1.
- 양주 옥정 A-20(2),A-20(3)블록 단지조감도 1부 : 붙임 2.
- 양주 옥정 A-20(2),A-20(3)블록 단지배치도 1부 : 붙임 3.
- 양주 옥정 A-20(2),A-20(3)블록 단지세대 평면도 1부 : 붙임 4.

붙임1 토지이용계획도



※ 상기 토지이용계획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붙임2 단지조감도



붙임3 단지배치도



붙임4 단위세대 평면도





59C



74A





84A



84AH



84B



84BH

※ 상기 도면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